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2. . . (제 회)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전해철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2. . .

법제처 심사를 마칩

1. 의결주문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고용노동부에 고용보험 실업급여 제도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3명(5급 2명, 6급 1명)을 평가대상 정원으로 증원하고, 사회기능 유지를 위한 필수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을 증원하며, 국제노동기구 협약사항 이행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을 증원하고, 고용노동부 소속기관에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심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6명(6급 2명, 7급 4명)을 한시적으로 증원하며, 고용노동부의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관리운영직군 정원 1명을 전문경력관 정원으로 전환하는 한편,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8285호 2021. 6. 15. 공포, 2022. 6. 16. 시행)됨에 고용정책실 및 지방고용노동관서에 가사근로자의 고용안정 등을 위한 기능을 추가하면서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2022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의 : 기획재정부 및 고용노동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및 신·구정원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2. 1. 00. ~ 1.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10호 중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을 “고용보험”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9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9의2. 가사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정책의 수립·총괄

제12조제3항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2.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징수에 관한 사항

제19조에 제10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의2.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인증 등에 관한 사항

제43조에 제1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⑪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심사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4년 2월 28일까지 별표 6에 따른 한시정원을 고용노동부 소속기관에 둔다.

별표 2 중 총계 “610”을 “617”로 하고, 일반직 계 “604”를 “611”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581”을 “587”로, 전문경력관 “3”을 “4”로 한다.

별표 4 제1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평가대상 정원

업무	정원	평가기간
1) 산업안전감독	1명	2022년 12월 31일까지
2) 고용보험 실업급여 제도운영	3명	2024년 12월 31일까지

별표 6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제43조제11항 관련 한시정원(존속기한: 2024년 2월 28일)

총계	6
일반직 계	6
5급 이하	6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3항제19호의2 및 제19조제10호의2의 개정규정은 2022년 6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0조(고용정책실) ①·② (생략)	제10조(고용정책실)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③ ----- ---
1. ~ 9. (생략)	1. ~ 9. (현행과 같음)
10. <u>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징수에 관한 사항</u>	10. <u>고용보험</u> ----- ----- --
11. ~ 19. (생략)	11. ~ 19. (현행과 같음)
<u><신 설></u>	<u>19의2. 가사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정책의 수립·총괄</u>
20. (생략)	20. (현행과 같음)
제12조(산업안전보건본부) ①·② (생략)	제12조(산업안전보건본부)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③ ----- ---
1. ~ 7. (생략)	1. ~ 7. (현행과 같음)
<u><신 설></u>	<u>7의2.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징수에 관한 사항</u>
8. ~ 23. (생략)	8. ~ 23. (현행과 같음)
제19조(직무) 지방고용노동청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제19조(직무) ----- -----.
1. ~ 10. (생략)	1. ~ 10. (현행과 같음)

<u><신 설></u> 11. (생 략) 제43조(한시정원) ① ~ ⑩ (생 략) <u><신 설></u>	<u>10의2.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인증 등에 관한 사항</u> 11. (현행과 같음) 제43조(한시정원) ① ~ ⑩ (현행 과 같음) <u>⑪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심사 업 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 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 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4 년 2월 28일까지 별표 6에 따른 한시정원을 고용노동부 소속기 관에 둔다.</u>
--	--

신 · 구 정원 대비 표

[별표 2]

고용노동부 공무원 정원표(제38조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610</u>	<u>617</u>	+7
·	·	·	
·	·	·	
일반직 계	<u>604</u>	<u>611</u>	+7
·	·	·	
·	·	·	
3급 또는 4급 이하	<u>581</u>	<u>587</u>	+6
전문경력관	<u>3</u>	<u>4</u>	+1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	
연 락 처	(044) 205 - 2348